

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의 견 서

(의안번호 제2786호)

- 시민협력국장 이원목입니다.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, 여러분!

- 오늘 시민협력국 소관 사안으로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
의안번호 제2786호,
「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조례안은
 - 시장은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
해야 하고,

 -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홍보,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 등과의
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

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
- 현재 기부자 예우 중심의 기부 문화 조성 내용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서울시는 사회적으로 기부가 확산하는 추세에 발맞춰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임을 말씀드립니다.

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11.

시민협력국장 이원목